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09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이훈기 · 황운하 · 허종식
이정현 · 이용우 · 정진욱
김 현 · 허성무 · 이인영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 제목 “(일반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일반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 및 정신건강진단”으로 한다.

③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진단(이하 “정신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신건강진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2조제4항 중 “작업장소”를 “심리치료, 작업장소”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7호 중 “제129조제1항”을 “제129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의2. (생략)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생략)

⑤ ~ ⑦ (생략)

-----십
-----리치료, 작업장소-----

-----.

⑤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제129조제1항·제3항-----

8.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